|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3호  (2016년 3월 16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음)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자선조직  제3장　자선모금  제4장　자선기부  제5장　자선신탁  제6장　자선재산  제7장　자선봉사  제8장　정보 공개  제9장　촉진 조치  제10장　감독관리  제11장　법률책임  제12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자선 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선 문화를 널리 알리며 자선 활동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선조직, 기부인, 자원봉사자, 수익자 등 자선 활동 참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고 발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전개하는 자선 활동 및 자선 관련 활동은 이 법의 관할을 받는다.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 법에서 자선 활동이라 함은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재산을 기부하거나 봉사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을 지칭한다.  (1) 빈곤 구제;  (2) 노인 돕기, 고아 구제, 위난자 구제, 장애인 돕기, 우대•구휼;  (3) 자연재해, 사고•재난 및 공공위생사건 등 돌발사건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 구조;  (4)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 사업의 발전 촉진;  (5) 오염과 기타 공해 예방•퇴치,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  (6)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공익활동.  제4조 자선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적법성, 자발성, 신용성, 비영리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 또는 파괴하거나 사회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5조 국가는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중화민족의 전통과 아름다운 덕행을 널리 알리며 법에 따라 자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 및 지원한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서가 전국의 자선 업무를 주관하고 현(縣)급 이상의 지방 각 급 인민정부의 민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자선 업무를 주관하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제7조 매년 9월 5일을 '중화 자선의 날'로 한다.  제2장 자선조직  제8조 이 법에서 자선조직이라 함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며 사회를 향한 자선 활동 전개를 취지로 하는 비영리성 조직을 지칭한다.  자선조직은 재단,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구 등 조직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자선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자선 활동의 전개를 취지로 삼아야 한다.  (2)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여야 한다.  (3) 자체의 명칭과 주소가 있어야 한다.  (4) 조직의 정관이 있어야 한다.  (5) 필요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6) 조건에 부합되는 조직 기구와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7)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자선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민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등기를 허가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 법이 공표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구 등 비영리성 조직은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에 자선조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조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정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자선조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등기 기한 또는 인정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민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6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자선조직의 정관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주소;  (2) 조직형태;  (3) 취지와 활동 범위;  (4) 재산의 출처와 구성;  (5) 의사결정기구, 집행기구의 구성과 직책;  (6) 내부 감독 시스템;  (7) 재산 관리•사용 제도;  (8) 프로젝트 관리 제도;  (9) 종료 사유 및 종료 후의 청산 방법;  (10)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 자선조직은 법률•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부 지배 구조를 수립 및 완비하고 의사결정, 집행, 감독 등 방면의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자선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은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를 집행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회계인식•측정을 하여야 하며 회계감독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고 관련 정부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선조직은 매년마다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에 연도업무보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에 전개한 모금 및 기부 접수 상황, 자선재산의 관리•사용 상황, 자선 프로젝트 실시 상황 및 자선조직 업무인력의 급여•복지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자선조직의 발기인, 주요 기부인 및 관리인력은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자선조직, 수익자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자선조직과의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자선조직의 발기인, 주요 기부인 및 관리인력은 해당 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선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거래 상황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선조직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률•법규의 위반과 사회공중도덕의 위배를 조건으로 하는 기부를 접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률•법규의 위반과 사회공중도덕의 위배를 수익자가 되는 조건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선조직의 책임자 직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1)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에 해당되는 경우;  (2) 고의범죄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로 형벌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증을 취소당했거나 취체(取締)당한 조직의 책임자 직을 맡은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조직이 등기증을 취소당했거나 취체(取締)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선조직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정관에 규정한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분할, 합병으로 인해 종료가 필요한 경우;  (3) 연속하여 2년간 자선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라 등기가 취소되었거나 등기증을 취소당한 경우;  (5)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자선조직을 종료하는 경우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의 의사결정기구는 이 법 제17조에 규정한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청산팀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청산팀이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정부서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을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청산 후 자선조직의 잔여재산은 자선조직 정관의 규정에 따라 취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선조직에 이전하여야 하고;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 민정부서의 주재하에 취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선조직에 이전하며 사회에 공고한다.  자선조직은 청산이 완료된 후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에서 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민정부서가 사회에 공고한다.  제19조 자선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업계조직을 성립한다.  자선업계조직은 업계의 소구(訴求)를 반영하고 업계의 교류를 촉진시키며 자선 업계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자선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20조 자선조직의 조직형태, 등기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3장 자선모금  제21조 이 법에서 자선모금이라 함은 자선조직이 자선의 취지에 기하여 재산을 모집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자선모금은 사회대중을 향한 공개모금과 특정 대상을 향한 지정대상 모금을 포함한다.  제22조 공개모금을 전개하고자 하는 자선조직은 공개모금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등기한 후 2년이 경과된 자선조직은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에 공개모금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민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조직이 내부 지배구조 완비, 규범적 운영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공개모금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모금 자격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기일부터 공개모금이 가능한 재단과 사회단체의 경우 민정부서가 직접적으로 공개모금 자격증서를 발급한다.  제23조 공개모금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취하여 전개할 수 있다.  (1) 공공장소에 모금함 설치;  (2) 사회대중을 향한 자선공연, 자선경기, 자선비자회, 자선전시회, 자선경매, 자선모임 등 개최;  (3) 라디오방송, TV방송, 신문지•잡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모금 정보 발표;  (4) 기타 공개모금 방식.  자선조직이 전 항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방식으로 전개하는 공개모금은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의 관할구역 외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가 전개하는 모금 활동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기부인의 기부 행위는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인터넷 상으로 공개모금을 전개하고자 하는 자선조직은 국무원 민정부서의 통일된 자선 정보 플랫폼 또는 국무원 민정부서가 지정한 자선 정보 플랫폼에 모금 정보를 발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그의 웹사이트에도 모금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24조 공개모금을 전개하는 경우 모금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모금방안은 모금의 목적, 시작시간과 마감시간, 지역, 활동 책임자의 성명과 사무실 주소, 기부 접수 방식, 은행계좌, 수익자, 모집금품의 용도, 모금비용, 잔여재산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금방안은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자선조직이 등기한 민정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개모집을 전개하는 경우 모금 활동 현장 또는 모금 활동 매개체의 현저한 위치에 모금조직의 명칭, 공개모금 자격증서, 모금방안, 연락방식, 모금정보 조회방식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 공개모금 자격이 없는 조직 또는 개인은 자선의 목적에 기하여 공개모금 자격이 있는 자선조직과 합작하여 당해 자선조직이 공개모금을 전개하고 모집한 금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라디오방송, TV방송, 신문지•잡지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통신운영업체는 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개모금을 전개하는 자선조직의 등기증서, 공개모금 자격증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28조 자선조직은 등기일부터 지정대상 모금을 전개할 수 있다.  지정대상 모금을 전개하는 자선조직은 발기인, 이사회 구성원과 회원 등 특정 대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모금의 목적과 모집금품의 용도 등 사항을 모금 대상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정대상 모금을 전개함에 있어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이 법 제23조에 규정한 방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재난 및 공공위생사건 등 돌발적 사건이 발생하여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민정부는 조율 매커니즘을 수립하여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모금 활동과 구조 활동이 신속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31조 모금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모금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 및 보호하여야 하고 모금 대상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사실을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기부하도록 모금 대상을 기만하거나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모금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모금 임무를 할당하거나 우회적으로 할당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질서, 기업의 생산경영과 주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자선의 명의를 빙자하거나 자선조직으로 가장하여 모금 활동을 전개하거나 재산을 편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자선기부  제34조 이 법에서 자선기부라 함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선의 목적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제35조 기부인은 자선조직을 통하여 기부하거나 직접적으로 수익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제36조 기부인이 기부하는 재산은 그가 처분권이 있는 합법적 재산이어야 한다. 기부재산은 현금, 현물, 건물, 유가증권, 지분, 지적재산권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을 포함한다.  기부인이 기부하는 현물은 사용가치가 있으며 안전, 위생, 환경보호 등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부인이 본 기업의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7조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공연, 경기, 판매, 경매 등 경영성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선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선조직 또는 기타 수증자와 기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활동이 끝난 후에는 기부계약에 따라 기부 의무를 이행하고 기부 상황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자선조직은 기부를 접수함에 있어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감독(인쇄)제작한 기부영수증을 기부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기부영수증에는 기부인, 기부재산의 유형과 수량, 자선조직의 명칭과 담당자의 성명, 영수증 발행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부인이 익명으로 기부하였거나 기부영수증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자선조직은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자선조직이 기부를 접수함에 있어 기부인이 서면 기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자선조직은 기부인과 서면 기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면 기부계약에는 기부인과 자선조직의 명칭, 기부재산의 유형, 수량, 품질, 용도, 인도시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 기부인과 자선조직은 기부재산의 용도와 수익자를 약정함에 있어 기부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자선기부를 이용하여 법률규정을 어기고 연초제품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선기부를 이용하여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법률에 의해 홍보가 금지된 제품과 사항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기부인은 기부계약에 따라 기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부인이 기부계약을 어기고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기부재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선조직 또는 기타 수증자는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부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자선조직과 기타 수증자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기부인이 라디오방송, TV방송, 신문지•잡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기부를 약속한 경우;  (2) 기부재산이 이 법 제3조 제(1)항 ~ 제(2)항에 규정한 자선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고 서면 기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인이 공개적으로 기부를 약속하였거나 서면 기부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그의 생산경영 또는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된 경우 해당 상황을 공개적으로 기부를 약속한 지역 또는 기부계약 체결지의 민정부서에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사회에 설명한 후 기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 기부인은 그가 기부한 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조회, 복사할 권리를 가지며 자선조직은 적시에 주동적으로 관련 상황을 기부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선조직이 기부계약에 약정한 용도를 위반하고 기부재산을 남용한 경우 기부인은 자선조직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선조직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부인은 민정부서에 신고, 제보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 자선기부를 실시하는 국유기업은 국유자산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준 및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자선신탁  제44조 이 법에서 자선신탁이라 함은 공익신탁에 속하되 위탁자가 자선의 목적에 기하여 법에 따라 그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향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며 자선 활동을 전개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45조 자선신탁의 설정과 수탁자•감독자의 확정은 서면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자선신탁 서류 체결일로부터 7일 내에 관련 서류를 수탁자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민정부서에 비안(備案)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제46조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정으로 위탁자가 신뢰하는 자선조직 또는 신탁회사가 담임할 수 있다.  제47조 자선신탁의 수탁자가 신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의 수탁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내에 변경 상황을 기존에 비안(備案)한 민정부비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 신탁의 목적에 따라야 하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신의성실, 신중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신탁 서류와 위탁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적시에 신탁사무 처리 상황, 신탁재산 관리•사용 상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 상황과 재무 상황을 최소 매년에 한번 그가 비안(備案)한 민정부서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 자선신탁의 위탁자는 수요에 근거하여 신탁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탁감독자는 수탁자의 행위를 감독하고 법에 의거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신탁감독자는 수탁자가 신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명의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50조 자선신탁의 설정, 신탁재산의 관리, 신탁 당사자, 신탁의 종료와 청산 등 사항에 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6장 자선재산  제51조 자선조직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발기인이 기부, 후원한 창립 재산.  (2) 모집한 재산.  (3) 기타 합법적인 재산.  제52조 자선조직의 재산은 정관과 기부계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부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발기인, 기부인 및 자선조직 구성원에게 배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자선재산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유용, 억류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자선조직은 모집한 재산을 등기부에 기록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비용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인이 기부한 현물이 보관 또는 운송하기 어렵거나 자선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현물인 경우 자선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소득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전부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4조 자선조직은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적법성, 안정성, 유효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수익은 전부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의 중대한 투자방안은 의사결정기구 3분의 2 이상 구성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정부가 후원한 재산과 기부계약에서 투자를 제한한 재산을 투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선조직의 책임자와 업무인력은 자선조직이 투자한 기업에서 겸직하거나 보수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전 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제정한다.  제55조 자선조직은 자선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모금방안 또는 기부계약에 따라 기부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금방안에 규정한 기부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선조직은 민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하며; 기부계약에 약정한 기부재산의 용도를 변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56조 자선조직은 자선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 절차를 최적화하고 운영 원가를 낮추며 자선재산의 사용 효익을 제고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은 프로젝트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프로젝트 실시 상황을 추적•감독하여야 한다.  제57조 자선 프로젝트 종료 후 남은 기부재산이 있는 경우 모금방안 또는 기부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모금방안에 해당 규정이 없거나 기부계약에 해당 약정이 없을 경우 자선조직은 잔여재산을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타 자선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 자선조직은 자선 수익자를 확정함에 있어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자선조직 관리인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 자선조직은 수요에 따라 수익자와 계약를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선재산의 용도, 금액 및 사용방법 등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수익자는 자선후원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계약에 따라 자선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계약에 따라 자선재산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기타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자선조직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익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자선조직은 계약을 해제하고 수익자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자선조직은 적극적으로 자선활동을 전개하여 자선재선을 충분하고 고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관리비용 최대 필요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절약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자선조직 중 공개모금 자격이 있는 재단의 자선 활동에 사용된 연간 지출액은 직전 연도 총 수입의 70% 또는 과거 3년간 연평균수입의 70%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연간 관리비용은 당해 연도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수한 사정으로 연간 관리비용이 상기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상황을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 설명하여야 한다.  공개모금 자격이 있는 재단을 제외한 기타 자선조직의 자선 활동 전개에 사용하는 연간 지출액 및 관리비용 기준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국무원 재정, 세무 등 부서와 회동하여 전항에 규정한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기부계약에 단일 항목 기부재산의 자선 활동 지출과 관리비용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장　자선봉사  제61조 이 법에서 자선봉사라 함은 자선조직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자선의 목적에 기하여 사회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발적 무상 봉사 및 기타 비영리성 봉사를 지칭한다.  자선조직은 자선봉사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스스로 봉사를 제공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봉사 전문기능을 구비한 기타 조직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제62조 자선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자원봉사자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여야 하며 수익자, 자원봉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 의료재활, 교육훈련 등 자선봉사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전문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업계조직이 제정한 표준과 규칙을 집행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선봉사 활동에 참여시킴에 있어 전문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 자선조직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선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는 경우 자선 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시하고 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봉사의 내용, 방식과 시간 등을 약정할 수 있다.  제65조 자선조직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실명등기를 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 봉사내용, 평가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자선조직은 성실하게 자원봉사기록증명서를 무상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 자선조직은 자원봉사자를 자선봉사 활동에 참여시킴에 있어 자원봉사자의 연령, 문화수준, 기능 및 신체상황과 어울리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67조 자선조직이 배정한 자선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관리에 복종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자선조직은 자원봉사자가 자선봉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은 자원봉사자를 신변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선봉사 활동에 참여시키기 전에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개인상해보험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 공개  제69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선정보 통계 및 공표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는 통일적인 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적시에 자선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자선 정보 공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선조직과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전 항에 규정한 플랫폼을 통하여 자선 정보를 발표하여 하며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70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적시에 다음 각 호의 자선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자선조직 등기사항;  (2) 자선신탁 비안(備案)사항;  (3) 공개모금 자격이 있는 자선조직 명단;  (4)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증빙 발행 자격을 보유한 자선조직 명단.  (5) 세제 혜택, 자금지원 또는 보조 등 자선 활동 촉진 조치.  (6) 자선조직으로부터 봉사를 구매한 정보.  (7) 자선조직, 자선신탁에 대한 검사•평가 실시 결과.  (8) 자선조직과 기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표창, 처벌 결과.  (9) 법률•법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정보.  제71조 자선조직 및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진실하고 온전하며 적시적이어야 한다.  제72조 자선조직은 조직 정관과 의사결정기구, 집행기구, 감독기구의 구성원 정보 및 국무원 민정부서에서 공개를 요구한 기타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자선조직은 지체없이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은 매년 연도업무보고와 재무회계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모금 자격이 있는 자선조직의 재무회계보고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73조 공개모금 자격이 있는 자선조직은 모금 상황과 자선 프로젝트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모금 주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모금 상황을 최소 3개월에 한번 공개하고 공개모금 활동이 끝난 후 3개월 내에 공개모금 상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자선 프로젝트의 실시 주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프로젝트 실시 상황을 최소 3개월에 한번 공개하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실시 상황과 모집금품의 사용 상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 자선조직이 지정대상 모금을 하는 경우 적시에 모금 상황, 모집금품의 관리•사용 상황을 기부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5조 자선조직 및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후원기준, 업무절차와 업무규칙 등 정보를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6조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및 기부인, 자선신탁의 수탁자가 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성명, 명칭, 주소, 통신방식 등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촉진 조치  제77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자선 사업 발전 촉진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선조직, 자선신탁의 수탁자 등에게 자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선 활동을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  제78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와 기타 부서 간에 자선 정보를 공유하는 매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9조 자선조직 및 자선조직이 취득한 수입은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린다.  제80조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재산을 기부하여 자선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린다. 기업의 자선기부 지출이 법률에 규정된 당해 연도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이월하여 향후 3년 내에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선활동에 사용되는 해외 기부인 기부물자는 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를 감면한다.  제81조 자선기부를 접수하는 수익자는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린다.  제82조 자선조직, 기부인, 수익자는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리며 관련 부서는 지체없이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 기부인이 자선조직에 현물, 유가증권과 지적재산권을 기부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권리 양도와 관련된 행정사업성비용을 면제한다.  제84조 국가는 빈곤 구제 자선 활동에 대해 특수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제85조 자선조직이 이 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선 활동을 조직, 전개 함에 있어 자선봉사 시설용 부지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국유할당토지 또는 농촌집체건설용지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법정(法定)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선봉사 시설용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 국가는 자선 사업에 금융정책 지원을 제공하며 금융기구가 자선조직, 자선신탁을 위하여 융자와 결산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87조 각 급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봉사를 구매하는 등 방식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자선조직이 사회에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조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사회에 관련 상황을 공개한다.  제88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자선 문화를 선양하고 공민의 자선 의식을 양성한다.  학교 등 교육기구는 자선 문화를 교육•교학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선 전문인재 육성을 격려하며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구가 자선 이론 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라디오방송, TV방송, 신문지•잡지, 인터넷 등 매체는 자선공익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자선 지식을 보급하며 자선 문화를 전파하여야 한다.  제89조 국가는 기업, 사업기관과 기타 조직이 자선 활동을 위한 장소와 기타 편리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90조 수익자의 동의를 거친 후 기부인은 기념의 목적으로 그가 기부한 자선 프로젝트에 타이틀을 달을 수 있다. 법률•법규에 비준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91조 국가는 자선표창제도를 수립하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자선 사업의 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을 표창한다.  제10장　감독관리  제92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자선 활동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자선업계조직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3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선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선조직의 주소와 자선 활동 발생지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 자선조직에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한다.  (3) 자선활동과 연관된 단체와 개인에게 감독관리 관련 상황을 조사한다.  (4)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자선조직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5)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치.  제94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가 자선조직,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인력 또는 조사인력이 최소 두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신분증명서와 검사•조사 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5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는 자선조직 및 그 책임자에 대한 신용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민정부서는 자선조직 평가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제3자기구가 자선조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격려 및 지지하고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6조 자선업계조직은 업계 규범을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7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자선조직, 자선신탁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민정부서,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선업계조직에 신고, 제보할 수 있다. 민정부서,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선업계조직은 신고, 제보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대중과 언론이 자선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자선의 명의를 빙자하거나 자선조직으로 가장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와 자선조직, 자선신탁의 위법•범칙행위를 폭로하며 여론과 사회 감독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11장　법률책임  제98조 자선조직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민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증서를 회수하여 말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1) 자선의 취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선재산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유용, 억류 또는 탈취한 경우.  (3) 법률•법규 또는 사회공중도덕에 위배되는 조건을 부가한 기부를 접수하거나 수익자에게 법률•법규 또는 사회공중도덕에 위배되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제99조 자선조직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민정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부 활동 정지 및 정돈을 명한다.  (1) 이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선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투자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재산을 투자에 사용한 경우;  (3) 기부 재산의 용도를 무단 변경한 경우;  (4) 자선 활동 전개에 사용한 연간 지출 또는 관리비용의 기준이 이 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에 따라 연도업무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를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모금방안을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지 아니한 경우.  (7) 기부인, 자원봉사자, 수익자의 개인 사생활 및 기부인, 자선식탁 위탁자가 공개를 금지한 성명, 명칭, 주소, 통신방식 등 정보를 누설한 경우.  자선조직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비밀,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선조직에게 전 두 항에 규정한 상황이 있거나 기타 경위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민정부서가 등기증서를 회수하여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00조 자선조직에게 이 법 제98조, 제99조 규정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민정부서가 몰수하고; 직접적으로 담당한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01조 모금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민정부서가 경고를 주고 모금 활동의 정지를 명하며; 불법으로 모집한 재산을 기부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민정부서가 몰수 및 기타 자선조직에 전달하여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관련 조직 또는 개인에게는 2만위안 이상 20만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공개모금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조직 또는 개인이 공개모금을 전개한 경우;  (2) 사실을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기부하도록 모금 대상을 기만, 유인한 경우;  (3) 조직 또는 개인에게 모금 임무를 할당하거나 우회적으로 할당한 경우;  (4) 공공질서,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경우.  라디오방송, TV방송, 신문지•잡지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통신운영업체가 이 법 제27조에 규정한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비판한다.  제102조 자선조직이 법에 따라 기부인에게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기록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부인에게 관련 상황을 적시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민정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할 것을 명한다.  제103조 자선조직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세제 혜택을 편취한 경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민정부서가 등기증서를 회수하여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04조 자선조직이 국가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후원한 경우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며 민정부서가 등기증서를 회수하여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05조 자선신탁의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민정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민정부서가 몰수하고;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신탁재산 및 그 수익을 자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신탁사무 처리 상황 및 재무 상황을 민정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106조 자선봉사 과정에서 자선조직 또는 자원봉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익자, 제3자에게 손해가 초래된 경우 자선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자원봉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선조직은 사후에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자선봉사 과정에서 자선조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자선조직이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선조직은 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107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선 명의를 빙자거나 자선조직으로 가장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108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업무인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경우 임면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1)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기부 임무를 할당하거나 우회적으로 할당하고 자원봉사자, 자선조직에게 봉사를 강요한 경우;  (3)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을 어기고 행정강제 조치와 행정처벌을 실시한 경우;  (5) 자선 재산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유용, 억류, 탈취한 경우;  (6) 기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  제109조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2장 부칙  제110조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단체 및 조직은 본 지역사회, 조직 내에서 대중성 상호부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111조 자선조직 이외의 기타 조직은 능력 범위 내에서 자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112조 이 법은 2016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四十三号  （2016年3月16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通过）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慈善组织  　　第三章　慈善募捐  　　第四章　慈善捐赠  　　第五章　慈善信托  　　第六章　慈善财产  　　第七章　慈善服务  　　第八章　信息公开  　　第九章　促进措施  　　第十章　监督管理  　　第十一章　法律责任  　　第十二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发展慈善事业，弘扬慈善文化，规范慈善活动，保护慈善组织、捐赠人、志愿者、受益人等慈善活动参与者的合法权益，促进社会进步，共享发展成果，制定本法。  　　第二条　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开展慈善活动以及与慈善有关的活动，适用本法。其他法律有特别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条　本法所称慈善活动，是指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以捐赠财产或者提供服务等方式，自愿开展的下列公益活动：  　　（一）扶贫、济困；  　　（二）扶老、救孤、恤病、助残、优抚；  　　（三）救助自然灾害、事故灾难和公共卫生事件等突发事件造成的损害；  　　（四）促进教育、科学、文化、卫生、体育等事业的发展；  　　（五）防治污染和其他公害，保护和改善生态环境；  　　（六）符合本法规定的其他公益活动。  　　第四条　开展慈善活动，应当遵循合法、自愿、诚信、非营利的原则，不得违背社会公德，不得危害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  　　第五条　国家鼓励和支持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弘扬中华民族传统美德，依法开展慈善活动。  　　第六条　国务院民政部门主管全国慈善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慈善工作；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法规，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相关工作。  　　第七条　每年9月5日为“中华慈善日”。  第二章　慈善组织  　　第八条　本法所称慈善组织，是指依法成立、符合本法规定，以面向社会开展慈善活动为宗旨的非营利性组织。  　　慈善组织可以采取基金会、社会团体、社会服务机构等组织形式。  　　第九条　慈善组织应当符合下列条件：  　　（一）以开展慈善活动为宗旨；  　　（二）不以营利为目的；  　　（三）有自己的名称和住所；  　　（四）有组织章程；  　　（五）有必要的财产；  　　（六）有符合条件的组织机构和负责人；  　　（七）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十条　设立慈善组织，应当向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申请登记，民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三十日内作出决定。符合本法规定条件的，准予登记并向社会公告；不符合本法规定条件的，不予登记并书面说明理由。  　　本法公布前已经设立的基金会、社会团体、社会服务机构等非营利性组织，可以向其登记的民政部门申请认定为慈善组织，民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二十日内作出决定。符合慈善组织条件的，予以认定并向社会公告；不符合慈善组织条件的，不予认定并书面说明理由。  　　有特殊情况需要延长登记或者认定期限的，报经国务院民政部门批准，可以适当延长，但延长的期限不得超过六十日。  　　第十一条　慈善组织的章程，应当符合法律法规的规定，并载明下列事项：  　　（一）名称和住所；  　　（二）组织形式；  　　（三）宗旨和活动范围；  　　（四）财产来源及构成；  　　（五）决策、执行机构的组成及职责；  　　（六）内部监督机制；  　　（七）财产管理使用制度；  　　（八）项目管理制度；  　　（九）终止情形及终止后的清算办法；  　　（十）其他重要事项。  　　第十二条　慈善组织应当根据法律法规以及章程的规定，建立健全内部治理结构，明确决策、执行、监督等方面的职责权限，开展慈善活动。  　　慈善组织应当执行国家统一的会计制度，依法进行会计核算，建立健全会计监督制度，并接受政府有关部门的监督管理。  　　第十三条　慈善组织应当每年向其登记的民政部门报送年度工作报告和财务会计报告。报告应当包括年度开展募捐和接受捐赠情况、慈善财产的管理使用情况、慈善项目实施情况以及慈善组织工作人员的工资福利情况。  　　第十四条　慈善组织的发起人、主要捐赠人以及管理人员，不得利用其关联关系损害慈善组织、受益人的利益和社会公共利益。  　　慈善组织的发起人、主要捐赠人以及管理人员与慈善组织发生交易行为的，不得参与慈善组织有关该交易行为的决策，有关交易情况应当向社会公开。  　　第十五条　慈善组织不得从事、资助危害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的活动，不得接受附加违反法律法规和违背社会公德条件的捐赠，不得对受益人附加违反法律法规和违背社会公德的条件。  　　第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慈善组织的负责人：  　　（一）无民事行为能力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的；  　　（二）因故意犯罪被判处刑罚，自刑罚执行完毕之日起未逾五年的；  　　（三）在被吊销登记证书或者被取缔的组织担任负责人，自该组织被吊销登记证书或者被取缔之日起未逾五年的；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十七条　慈善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终止：  　　（一）出现章程规定的终止情形的；  　　（二）因分立、合并需要终止的；  　 （三）连续二年未从事慈善活动的；  　　（四）依法被撤销登记或者吊销登记证书的；  　　（五）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终止的其他情形。  　　第十八条　慈善组织终止，应当进行清算。  慈善组织的决策机构应当在本法第十七条规定的终止情形出现之日起三十日内成立清算组进行清算，并向社会公告。不成立清算组或者清算组不履行职责的，民政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指定有关人员组成清算组进行清算。  　　慈善组织清算后的剩余财产，应当按照慈善组织章程的规定转给宗旨相同或者相近的慈善组织；章程未规定的，由民政部门主持转给宗旨相同或者相近的慈善组织，并向社会公告。  　　慈善组织清算结束后，应当向其登记的民政部门办理注销登记，并由民政部门向社会公告。  　　第十九条　慈善组织依法成立行业组织。  　　慈善行业组织应当反映行业诉求，推动行业交流，提高慈善行业公信力，促进慈善事业发展。  　　第二十条　慈善组织的组织形式、登记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制定。  第三章　慈善募捐  　　第二十一条　本法所称慈善募捐，是指慈善组织基于慈善宗旨募集财产的活动。  　　慈善募捐，包括面向社会公众的公开募捐和面向特定对象的定向募捐。  第二十二条　慈善组织开展公开募捐，应当取得公开募捐资格。依法登记满二年的慈善组织，可以向其登记的民政部门申请公开募捐资格。民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二十日内作出决定。慈善组织符合内部治理结构健全、运作规范的条件的，发给公开募捐资格证书；不符合条件的，不发给公开募捐资格证书并书面说明理由。  　　法律、行政法规规定自登记之日起可以公开募捐的基金会和社会团体，由民政部门直接发给公开募捐资格证书。  　　第二十三条　开展公开募捐，可以采取下列方式：  　　（一）在公共场所设置募捐箱；  　　（二）举办面向社会公众的义演、义赛、义卖、义展、义拍、慈善晚会等；  　　（三）通过广播、电视、报刊、互联网等媒体发布募捐信息；  　　（四）其他公开募捐方式。  慈善组织采取前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方式开展公开募捐的，应当在其登记的民政部门管辖区域内进行，确有必要在其登记的民政部门管辖区域外进行的，应当报其开展募捐活动所在地的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备案。捐赠人的捐赠行为不受地域限制。  　　慈善组织通过互联网开展公开募捐的，应当在国务院民政部门统一或者指定的慈善信息平台发布募捐信息，并可以同时在其网站发布募捐信息。  　　第二十四条　开展公开募捐，应当制定募捐方案。募捐方案包括募捐目的、起止时间和地域、活动负责人姓名和办公地址、接受捐赠方式、银行账户、受益人、募得款物用途、募捐成本、剩余财产的处理等。  　　募捐方案应当在开展募捐活动前报慈善组织登记的民政部门备案。  　　第二十五条　开展公开募捐，应当在募捐活动现场或者募捐活动载体的显著位置，公布募捐组织名称、公开募捐资格证书、募捐方案、联系方式、募捐信息查询方法等。  　　第二十六条　不具有公开募捐资格的组织或者个人基于慈善目的，可以与具有公开募捐资格的慈善组织合作，由该慈善组织开展公开募捐并管理募得款物。  　　第二十七条　广播、电视、报刊以及网络服务提供者、电信运营商，应当对利用其平台开展公开募捐的慈善组织的登记证书、公开募捐资格证书进行验证。  　　第二十八条　慈善组织自登记之日起可以开展定向募捐。  　　慈善组织开展定向募捐，应当在发起人、理事会成员和会员等特定对象的范围内进行，并向募捐对象说明募捐目的、募得款物用途等事项。  　　第二十九条　开展定向募捐，不得采取或者变相采取本法第二十三条规定的方式。  　　第三十条　发生重大自然灾害、事故灾难和公共卫生事件等突发事件，需要迅速开展救助时，有关人民政府应当建立协调机制，提供需求信息，及时有序引导开展募捐和救助活动。  　　第三十一条　开展募捐活动，应当尊重和维护募捐对象的合法权益，保障募捐对象的知情权，不得通过虚构事实等方式欺骗、诱导募捐对象实施捐赠。  　　第三十二条　开展募捐活动，不得摊派或者变相摊派，不得妨碍公共秩序、企业生产经营和居民生活。  　　第三十三条　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假借慈善名义或者假冒慈善组织开展募捐活动，骗取财产。  第四章　慈善捐赠  　　第三十四条　本法所称慈善捐赠，是指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基于慈善目的，自愿、无偿赠与财产的活动。  　　第三十五条　捐赠人可以通过慈善组织捐赠，也可以直接向受益人捐赠。  　　第三十六条　捐赠人捐赠的财产应当是其有权处分的合法财产。捐赠财产包括货币、实物、房屋、有价证券、股权、知识产权等有形和无形财产。  　　捐赠人捐赠的实物应当具有使用价值，符合安全、卫生、环保等标准。  　　捐赠人捐赠本企业产品的，应当依法承担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三十七条　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开展演出、比赛、销售、拍卖等经营性活动，承诺将全部或者部分所得用于慈善目的的，应当在举办活动前与慈善组织或者其他接受捐赠的人签订捐赠协议，活动结束后按照捐赠协议履行捐赠义务，并将捐赠情况向社会公开。  　　第三十八条　慈善组织接受捐赠，应当向捐赠人开具由财政部门统一监（印）制的捐赠票据。捐赠票据应当载明捐赠人、捐赠财产的种类及数量、慈善组织名称和经办人姓名、票据日期等。捐赠人匿名或者放弃接受捐赠票据的，慈善组织应当做好相关记录。  　　第三十九条　慈善组织接受捐赠，捐赠人要求签订书面捐赠协议的，慈善组织应当与捐赠人签订书面捐赠协议。  　　书面捐赠协议包括捐赠人和慈善组织名称，捐赠财产的种类、数量、质量、用途、交付时间等内容。  　　第四十条　捐赠人与慈善组织约定捐赠财产的用途和受益人时，不得指定捐赠人的利害关系人作为受益人。  任何组织和个人不得利用慈善捐赠违反法律规定宣传烟草制品，不得利用慈善捐赠以任何方式宣传法律禁止宣传的产品和事项。  　　第四十一条　捐赠人应当按照捐赠协议履行捐赠义务。捐赠人违反捐赠协议逾期未交付捐赠财产，有下列情形之一的，慈善组织或者其他接受捐赠的人可以要求交付；捐赠人拒不交付的，慈善组织和其他接受捐赠的人可以依法向人民法院申请支付令或者提起诉讼：  　　（一）捐赠人通过广播、电视、报刊、互联网等媒体公开承诺捐赠的；  　　（二）捐赠财产用于本法第三条第一项至第三项规定的慈善活动，并签订书面捐赠协议的。  捐赠人公开承诺捐赠或者签订书面捐赠协议后经济状况显著恶化，严重影响其生产经营或者家庭生活的，经向公开承诺捐赠地或者书面捐赠协议签订地的民政部门报告并向社会公开说明情况后，可以不再履行捐赠义务。  　　第四十二条　捐赠人有权查询、复制其捐赠财产管理使用的有关资料，慈善组织应当及时主动向捐赠人反馈有关情况。  　　慈善组织违反捐赠协议约定的用途，滥用捐赠财产的，捐赠人有权要求其改正；拒不改正的，捐赠人可以向民政部门投诉、举报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四十三条　国有企业实施慈善捐赠应当遵守有关国有资产管理的规定，履行批准和备案程序。  第五章　慈善信托  　　第四十四条　本法所称慈善信托属于公益信托，是指委托人基于慈善目的，依法将其财产委托给受托人，由受托人按照委托人意愿以受托人名义进行管理和处分，开展慈善活动的行为。  　　第四十五条　设立慈善信托、确定受托人和监察人，应当采取书面形式。受托人应当在慈善信托文件签订之日起七日内，将相关文件向受托人所在地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备案。  　　未按照前款规定将相关文件报民政部门备案的，不享受税收优惠。  　　第四十六条　慈善信托的受托人，可以由委托人确定其信赖的慈善组织或者信托公司担任。  第四十七条　慈善信托的受托人违反信托义务或者难以履行职责的，委托人可以变更受托人。变更后的受托人应当自变更之日起七日内，将变更情况报原备案的民政部门重新备案。  　　第四十八条　慈善信托的受托人管理和处分信托财产，应当按照信托目的，恪尽职守，履行诚信、谨慎管理的义务。  　　慈善信托的受托人应当根据信托文件和委托人的要求，及时向委托人报告信托事务处理情况、信托财产管理使用情况。慈善信托的受托人应当每年至少一次将信托事务处理情况及财务状况向其备案的民政部门报告，并向社会公开。  　　第四十九条　慈善信托的委托人根据需要，可以确定信托监察人。  　　信托监察人对受托人的行为进行监督，依法维护委托人和受益人的权益。信托监察人发现受托人违反信托义务或者难以履行职责的，应当向委托人报告，并有权以自己的名义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五十条　慈善信托的设立、信托财产的管理、信托当事人、信托的终止和清算等事项，本章未规定的，适用本法其他有关规定；本法未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信托法》的有关规定。  第六章　慈善财产  　　第五十一条　慈善组织的财产包括：  　　（一）发起人捐赠、资助的创始财产；  　　（二）募集的财产；  　　（三）其他合法财产。  　　第五十二条　慈善组织的财产应当根据章程和捐赠协议的规定全部用于慈善目的，不得在发起人、捐赠人以及慈善组织成员中分配。  　　任何组织和个人不得私分、挪用、截留或者侵占慈善财产。  　　第五十三条　慈善组织对募集的财产，应当登记造册，严格管理，专款专用。  　　捐赠人捐赠的实物不易储存、运输或者难以直接用于慈善目的的，慈善组织可以依法拍卖或者变卖，所得收入扣除必要费用后，应当全部用于慈善目的。  　　第五十四条　慈善组织为实现财产保值、增值进行投资的，应当遵循合法、安全、有效的原则，投资取得的收益应当全部用于慈善目的。慈善组织的重大投资方案应当经决策机构组成人员三分之二以上同意。政府资助的财产和捐赠协议约定不得投资的财产，不得用于投资。慈善组织的负责人和工作人员不得在慈善组织投资的企业兼职或者领取报酬。  　　前款规定事项的具体办法，由国务院民政部门制定。  　　第五十五条　慈善组织开展慈善活动，应当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按照募捐方案或者捐赠协议使用捐赠财产。慈善组织确需变更募捐方案规定的捐赠财产用途的，应当报民政部门备案；确需变更捐赠协议约定的捐赠财产用途的，应当征得捐赠人同意。  　　第五十六条　慈善组织应当合理设计慈善项目，优化实施流程，降低运行成本，提高慈善财产使用效益。  　　慈善组织应当建立项目管理制度，对项目实施情况进行跟踪监督。  　　第五十七条　慈善项目终止后捐赠财产有剩余的，按照募捐方案或者捐赠协议处理；募捐方案未规定或者捐赠协议未约定的，慈善组织应当将剩余财产用于目的相同或者相近的其他慈善项目，并向社会公开。  　　第五十八条　慈善组织确定慈善受益人，应当坚持公开、公平、公正的原则，不得指定慈善组织管理人员的利害关系人作为受益人。  　　第五十九条　慈善组织根据需要可以与受益人签订协议，明确双方权利义务，约定慈善财产的用途、数额和使用方式等内容。  　　受益人应当珍惜慈善资助，按照协议使用慈善财产。受益人未按照协议使用慈善财产或者有其他严重违反协议情形的，慈善组织有权要求其改正；受益人拒不改正的，慈善组织有权解除协议并要求受益人返还财产。  　　第六十条　慈善组织应当积极开展慈善活动，充分、高效运用慈善财产，并遵循管理费用最必要原则，厉行节约，减少不必要的开支。慈善组织中具有公开募捐资格的基金会开展慈善活动的年度支出，不得低于上一年总收入的百分之七十或者前三年收入平均数额的百分之七十；年度管理费用不得超过当年总支出的百分之十，特殊情况下，年度管理费用难以符合前述规定的，应当报告其登记的民政部门并向社会公开说明情况。  　　具有公开募捐资格的基金会以外的慈善组织开展慈善活动的年度支出和管理费用的标准，由国务院民政部门会同国务院财政、税务等部门依照前款规定的原则制定。  　　捐赠协议对单项捐赠财产的慈善活动支出和管理费用有约定的，按照其约定。  第七章　慈善服务  　　第六十一条　本法所称慈善服务，是指慈善组织和其他组织以及个人基于慈善目的，向社会或者他人提供的志愿无偿服务以及其他非营利服务。  慈善组织开展慈善服务，可以自己提供或者招募志愿者提供，也可以委托有服务专长的其他组织提供。  　　第六十二条　开展慈善服务，应当尊重受益人、志愿者的人格尊严，不得侵害受益人、志愿者的隐私。  　　第六十三条　开展医疗康复、教育培训等慈善服务，需要专门技能的，应当执行国家或者行业组织制定的标准和规程。  　　慈善组织招募志愿者参与慈善服务，需要专门技能的，应当对志愿者开展相关培训。  　　第六十四条　慈善组织招募志愿者参与慈善服务，应当公示与慈善服务有关的全部信息，告知服务过程中可能发生的风险。  　　慈善组织根据需要可以与志愿者签订协议，明确双方权利义务，约定服务的内容、方式和时间等。  　　第六十五条　慈善组织应当对志愿者实名登记，记录志愿者的服务时间、内容、评价等信息。根据志愿者的要求，慈善组织应当无偿、如实出具志愿服务记录证明。  　　第六十六条　慈善组织安排志愿者参与慈善服务，应当与志愿者的年龄、文化程度、技能和身体状况相适应。  　　第六十七条　志愿者接受慈善组织安排参与慈善服务的，应当服从管理，接受必要的培训。  　　第六十八条　慈善组织应当为志愿者参与慈善服务提供必要条件，保障志愿者的合法权益。  　　慈善组织安排志愿者参与可能发生人身危险的慈善服务前，应当为志愿者购买相应的人身意外伤害保险。  第八章　信息公开  　　第六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建立健全慈善信息统计和发布制度。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在统一的信息平台，及时向社会公开慈善信息，并免费提供慈善信息发布服务。  　　慈善组织和慈善信托的受托人应当在前款规定的平台发布慈善信息，并对信息的真实性负责。  　　第七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及时向社会公开下列慈善信息：  　　（一）慈善组织登记事项；  　　（二）慈善信托备案事项；  　　（三）具有公开募捐资格的慈善组织名单；  　　（四）具有出具公益性捐赠税前扣除票据资格的慈善组织名单；  　　（五）对慈善活动的税收优惠、资助补贴等促进措施；  　　（六）向慈善组织购买服务的信息；  　　（七）对慈善组织、慈善信托开展检查、评估的结果；  　　（八）对慈善组织和其他组织以及个人的表彰、处罚结果；  　　（九）法律法规规定应当公开的其他信息。  　　第七十一条　慈善组织、慈善信托的受托人应当依法履行信息公开义务。信息公开应当真实、完整、及时。  　　第七十二条　慈善组织应当向社会公开组织章程和决策、执行、监督机构成员信息以及国务院民政部门要求公开的其他信息。上述信息有重大变更的，慈善组织应当及时向社会公开。  　　慈善组织应当每年向社会公开其年度工作报告和财务会计报告。具有公开募捐资格的慈善组织的财务会计报告须经审计。  　　第七十三条　具有公开募捐资格的慈善组织应当定期向社会公开其募捐情况和慈善项目实施情况。  　　公开募捐周期超过六个月的，至少每三个月公开一次募捐情况，公开募捐活动结束后三个月内应当全面公开募捐情况。  　　慈善项目实施周期超过六个月的，至少每三个月公开一次项目实施情况，项目结束后三个月内应当全面公开项目实施情况和募得款物使用情况。  　　第七十四条　慈善组织开展定向募捐的，应当及时向捐赠人告知募捐情况、募得款物的管理使用情况。  　　第七十五条　慈善组织、慈善信托的受托人应当向受益人告知其资助标准、工作流程和工作规范等信息。  　　第七十六条　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的信息以及捐赠人、慈善信托的委托人不同意公开的姓名、名称、住所、通讯方式等信息，不得公开。  第九章　促进措施  　　第七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经济社会发展情况，制定促进慈善事业发展的政策和措施。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向慈善组织、慈善信托受托人等提供慈善需求信息，为慈善活动提供指导和帮助。  　　第七十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建立与其他部门之间的慈善信息共享机制。  　　第七十九条　慈善组织及其取得的收入依法享受税收优惠。  　　第八十条　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捐赠财产用于慈善活动的，依法享受税收优惠。企业慈善捐赠支出超过法律规定的准予在计算企业所得税应纳税所得额时当年扣除的部分，允许结转以后三年内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境外捐赠用于慈善活动的物资，依法减征或者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  第八十一条　受益人接受慈善捐赠，依法享受税收优惠。  　　第八十二条　慈善组织、捐赠人、受益人依法享受税收优惠的，有关部门应当及时办理相关手续。  　　第八十三条　捐赠人向慈善组织捐赠实物、有价证券、股权和知识产权的，依法免征权利转让的相关行政事业性费用。  　　第八十四条　国家对开展扶贫济困的慈善活动，实行特殊的优惠政策。  　　第八十五条　慈善组织开展本法第三条第一项、第二项规定的慈善活动需要慈善服务设施用地的，可以依法申请使用国有划拨土地或者农村集体建设用地。慈善服务设施用地非经法定程序不得改变用途。  　　第八十六条　国家为慈善事业提供金融政策支持，鼓励金融机构为慈善组织、慈善信托提供融资和结算等金融服务。  　　第八十七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可以依法通过购买服务等方式，支持符合条件的慈善组织向社会提供服务，并依照有关政府采购的法律法规向社会公开相关情况。  　　第八十八条　国家采取措施弘扬慈善文化，培育公民慈善意识。  　　学校等教育机构应当将慈善文化纳入教育教学内容。国家鼓励高等学校培养慈善专业人才，支持高等学校和科研机构开展慈善理论研究。  　　广播、电视、报刊、互联网等媒体应当积极开展慈善公益宣传活动，普及慈善知识，传播慈善文化。  　　第八十九条　国家鼓励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为开展慈善活动提供场所和其他便利条件。  　　第九十条　经受益人同意，捐赠人对其捐赠的慈善项目可以冠名纪念，法律法规规定需要批准的，从其规定。  　　第九十一条　国家建立慈善表彰制度，对在慈善事业发展中做出突出贡献的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由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予以表彰。  第十章　监督管理  　　第九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依法履行职责，对慈善活动进行监督检查，对慈善行业组织进行指导。  　　第九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慈善组织，有权采取下列措施：  　　（一）对慈善组织的住所和慈善活动发生地进行现场检查；  　　（二）要求慈善组织作出说明，查阅、复制有关资料；  　　（三）向与慈善活动有关的单位和个人调查与监督管理有关的情况；  　　（四）经本级人民政府批准，可以查询慈善组织的金融账户；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施。  　　第九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对慈善组织、有关单位和个人进行检查或者调查时，检查人员或者调查人员不得少于二人，并应当出示合法证件和检查、调查通知书。  　　第九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建立慈善组织及其负责人信用记录制度，并向社会公布。  　　民政部门应当建立慈善组织评估制度，鼓励和支持第三方机构对慈善组织进行评估，并向社会公布评估结果。  　　第九十六条　慈善行业组织应当建立健全行业规范，加强行业自律。  　　第九十七条　任何单位和个人发现慈善组织、慈善信托有违法行为的，可以向民政部门、其他有关部门或者慈善行业组织投诉、举报。民政部门、其他有关部门或者慈善行业组织接到投诉、举报后，应当及时调查处理。  　　国家鼓励公众、媒体对慈善活动进行监督，对假借慈善名义或者假冒慈善组织骗取财产以及慈善组织、慈善信托的违法违规行为予以曝光，发挥舆论和社会监督作用。  第十一章　法律责任  　　第九十八条　慈善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由民政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吊销登记证书并予以公告：  　　（一）未按照慈善宗旨开展活动的；  　　（二）私分、挪用、截留或者侵占慈善财产的；  　　（三）接受附加违反法律法规或者违背社会公德条件的捐赠，或者对受益人附加违反法律法规或者违背社会公德的条件的。  第九十九条　慈善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由民政部门予以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限期停止活动并进行整改：  　　（一）违反本法第十四条规定造成慈善财产损失的；  　　（二）将不得用于投资的财产用于投资的；  　　（三）擅自改变捐赠财产用途的；  　　（四）开展慈善活动的年度支出或者管理费用的标准违反本法第六十条规定的；  　　（五）未依法履行信息公开义务的；  　　（六）未依法报送年度工作报告、财务会计报告或者报备募捐方案的；  　　（七）泄露捐赠人、志愿者、受益人个人隐私以及捐赠人、慈善信托的委托人不同意公开的姓名、名称、住所、通讯方式等信息的。  　　慈善组织违反本法规定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予以处罚。  　　慈善组织有前两款规定的情形，经依法处理后一年内再出现前款规定的情形，或者有其他情节严重情形的，由民政部门吊销登记证书并予以公告。  　　第一百条　慈善组织有本法第九十八条、第九十九条规定的情形，有违法所得的，由民政部门予以没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  　　第一百零一条　开展募捐活动有下列情形之一的，由民政部门予以警告、责令停止募捐活动；对违法募集的财产，责令退还捐赠人；难以退还的，由民政部门予以收缴，转给其他慈善组织用于慈善目的；对有关组织或者个人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  　　（一）不具有公开募捐资格的组织或者个人开展公开募捐的；  　　（二）通过虚构事实等方式欺骗、诱导募捐对象实施捐赠的；  　　（三）向单位或者个人摊派或者变相摊派的；  　　（四）妨碍公共秩序、企业生产经营或者居民生活的。  　　广播、电视、报刊以及网络服务提供者、电信运营商未履行本法第二十七条规定的验证义务的，由其主管部门予以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予以通报批评。  　　第一百零二条　慈善组织不依法向捐赠人开具捐赠票据、不依法向志愿者出具志愿服务记录证明或者不及时主动向捐赠人反馈有关情况的，由民政部门予以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限期停止活动。  　　第一百零三条　慈善组织弄虚作假骗取税收优惠的，由税务机关依法查处；情节严重的，由民政部门吊销登记证书并予以公告。  第一百零四条　慈善组织从事、资助危害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活动的，由有关机关依法查处，由民政部门吊销登记证书并予以公告。  　　第一百零五条　慈善信托的受托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民政部门予以警告，责令限期改正；有违法所得的，由民政部门予以没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  　　（一）将信托财产及其收益用于非慈善目的的；  　　（二）未按照规定将信托事务处理情况及财务状况向民政部门报告或者向社会公开的。  　　第一百零六条　慈善服务过程中，因慈善组织或者志愿者过错造成受益人、第三人损害的，慈善组织依法承担赔偿责任；损害是由志愿者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的，慈善组织可以向其追偿。  　　志愿者在参与慈善服务过程中，因慈善组织过错受到损害的，慈善组织依法承担赔偿责任；损害是由不可抗力造成的，慈善组织应当给予适当补偿。  　　第一百零七条　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假借慈善名义或者假冒慈善组织骗取财产的，由公安机关依法查处。  　　第一百零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依法应当给予处分的，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一）未依法履行信息公开义务的；  　　（二）摊派或者变相摊派捐赠任务，强行指定志愿者、慈善组织提供服务的；  　　（三）未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  　　（四）违法实施行政强制措施和行政处罚的；  　　（五）私分、挪用、截留或者侵占慈善财产的；  　　（六）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行为。  　　第一百零九条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二章　附 则  　　第一百一十条　城乡社区组织、单位可以在本社区、单位内部开展群众性互助互济活动。  　　第一百一十一条　慈善组织以外的其他组织可以开展力所能及的慈善活动。  　　第一百一十二条　本法自2016年9月1日起施行。 |